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-

1.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2. 제안일자 및 상정일자

○ 제안일자 : 2007년 11월 30일

○ 상정일자 : 제266회 정례회

2007년 11월 30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- 예산과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명시하여 의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의회의결 심사 근거 마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를 제71조로 변경함.(안 제1조)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제1항을 제63조제1항으로 변경함(안 제15조)

○ 제71조를 제79조로 변경함(안 제77조)

○ 제78조를 제86조로, 제75조를 제83조로 변경함(안 제89조)

나. 예산 및 기금상 조치수반 의안 재원조달방안 제출 명시

○ 제20조제3항 신설(안 제20조)

나. 기금관련 심사 근거 마련

○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서에 대하여 예산안 제출 및 심사 의결 과정을 준용토록 제72조의2 신설(안 제72조)

5.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규칙제정 근거 및 관련법규 조문번호를 인용하고 있는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며
- 예산과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제출시 시행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안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명시한 것은 의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 근거가 미비하였던 것을 회의규칙에 마련하여 예산의 제출 및 심사 등의 과정을 준용하여 처리토록 한 것은 관련법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